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94호 2021. 4. 12.(월)

선 람	기 관 의 장

규 칙

-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292호)

훈 령

- 예천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예천군 훈령 제430호)

고 시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1-28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92호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근무 및 휴무)”를 “(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및 휴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숙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취침하게”를 “근무하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취침하게”를 “휴식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각 부서의 장은 숙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를 마치는 시간”을 “긴급한 민원 업무 처리, 재해 발생 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종료 시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숙직근무”를 “당직근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기존 숙직근무자에게만 적용되는 대체휴무를 일직근무자들에게도 확대 시행하여 직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을 완화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숙직근무자뿐만 아니라 일직근무자에게도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제공(제5조)

예천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4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30호

예천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야, 하천 등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기물의
투기행위와 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예천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
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을 위하여 신고대상,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등) 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신고대상은 「폐기물관
리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 행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처리 행위는 생활폐기물(5톤 미만)과 사업장폐

기물을 임야, 하천변, 농지주변 등에 버리거나 그곳에서 소각하는 행위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불법처리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예천군청(환경관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 제5조(신고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군수는 제2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불법처리 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하나의 불법처리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불법처리 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포상금은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상금 지급 시에는 수령자를 확인하여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장을 기록·유지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1. 담배꽂초, 휴지 등 쓰레기 투기행위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항에 관한 사항
3. 가정에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에 관한 사항
4. 농가에서 농산폐기물(폐비닐 소량 포함)을 소각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
5.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의 발생에 관한 사항
6.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7. 확보한 예산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8.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9.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10. 신고인 1인의 포상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1. 신고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외 다른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
12.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검거에 기여한 경우

제9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군에서 기 운영 중인 심사위원회 중 가

장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하여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불법처리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6조제2항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 1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벌 금 형	- 벌금액의 10% (단,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기소유예, 선고유예	- 10만원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비 고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30만원	※ 행정처분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며 병과되는 경우 많은 것 적용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만원 (30만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10만원	

3.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과 태 료	부과액의 10%	※지급한도 - 최저 2만원 - 최고 : 30만원
과 징 금	부과액의 10%	

[별지 제1호서식]

불법처리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금액 (지급일자)	비 고 (심선고 확인 등)
			성명	연락처		현지확인일자	조사결과	회신일자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모사전송,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연번	구 분	수 령 자 현 황				포 상 금 수 령 액	수령일자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주) 구분은 투기, 매립, 소각 등으로 기재

◇제정이유

임야, 하천 등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기물의 투기행위와 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예천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예천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제2조)

-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벌 가능한 사항

나. 신고방법 및 접수(제3조)

- 예천군청(환경관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모사전송, 우편 등으로 신청

다. 신고인 보호(제5조)

- 신고인 인적사항 누설 금지

라. 포상금 지급기준(제6조 및 별표)

- 징역형·벌금형, 행정처분, 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라 구분

마. 포상금 지급 제외(제8조)

-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담배꽂초, 휴지 등 쓰레기 투기행위에 관한 사항 등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2일

예 천 군 수

1. 사업명칭 :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10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세한종합건설 권기운
나. 주 소 : 경북 안동시 광명로 169, 401호(옥동,트윈빌딩)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10
4. 사업개요 및 변경내용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업비	비 고
대지조성	○ 대지면적 : 15,249.00m ² ○ 주택용지 : 12,119.00m ² (21필지공급) ○ 주택외용지 · 공동보관소 및 공용주차장(6면) 465m ² · 기반시설 등 기타용지 : 2,665m ²	166,200만원	

- 사업주체 : (대지조성사업자) 변경
 - (기존)주)예안이엔지 변상무 →(변경)세한종합건설주식회사(주) 권기운
- 사업내용 : 기 승인내용과 동일

5. 사업시행기간 : 2021.04.15 ~ 2022. 06. 30

6. 다른 법률의 의제 주요사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나. 산지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7. 관계서류는 예천군청 건축과(☎054-650-63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